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484호
2. 발 의 자 : 이동현 의원
3. 발의일자 : 2021. 5. 28.
4. 회부일자 : 2021. 5. 31.

II. 제안이유

-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 학교 기숙사의 인권 친화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입사학생자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IV.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1년 5월 28일 이동현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484호로 발의되어 2021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사학생의 인권보장 및 학업편의를 도모하는 등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최근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됨에 따라 이러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학생 선수 기숙사 등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¹⁾

[표-1] 학생 선수 기숙사 운영 현황

| 구 분 |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
|------|-----|------|------|
| 학교 수 | 1교 | 26교 | 27교 |
| 학생 수 | 36명 | 562명 | 598명 |

1)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③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의 훈련장(학교운동부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2.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복도·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3.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1. 4. 20.]

[표-2] 일반 학생 기숙사 운영 현황

| 구 분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 계 |
|------|------|--------|------|--------|
| 학교 수 | 4교 | 32교 | 2교 | 38교 |
| 학생 수 | 186명 | 5,120명 | 103명 | 5,409명 |

○ 현재 서울시 관내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62교로 학생 선수 기숙사는 27교, 일반 학생 기숙사는 38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바²⁾,

[표-3]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 중 인권침해요소 규정

| 구 분 | 규정 |
|---------|--|
| 핸드폰 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점) 휴대폰, 전자 기기 무단 사용 -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갤럭시 탭, DMB 등은 18시 이후 절대 사용할 수 없다. - 휴대폰 사용 시간을 엄수한다.(부모 동의하에 사감이 취침시간 동안에 보관) - 생활실에 전자기기 반입이 불가하며 불시에 검사활동에 동의합니다. (휴대폰, 노트북, 테블릿PC, PMP 등) - 취침시간 이후부터 아침 기상전까지 핸드폰 보관함에 핸드폰을 보관하여 호실 내 타학생의 취침권을 보장되도록 운영하는 것에 서약합니다. |
| 점호 관련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에 등교하는 날의 점호는 오전 06시, 저녁에는 23시 00분에 실시하며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의 아침 점호는 오전 07시, 저녁 점호는 22시에 실시하며 점호 이후 외출은 불가능하다. 3. 점호는 기숙사 생활의 시작이며 기본이므로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태도를 바르게 한다. |
| 이성교제 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사) 선,후배 동기 사귀 |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일부 학교의 기숙사 운영규정에 ① 핸드폰 압수 또는 사용 제한 ② 군대식의 점호 실시 ③ 이성교제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인권침해요소로 보고 시정을 권고해오고 있습니다.³⁾

2) 3교는 일반 학생 기숙사와 학생 선수 기숙사를 함께 운영함.

3) 보도자료 : '인권위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통신자유 침해"'(연합뉴스, 2017.11.17.)

- 이처럼 현재 기숙사 운영 등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부재로 기숙사 내에서 여전히 학생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동 조례안이 합리적이고 학생인권에 부합하는 기숙사 운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을, 본칙 규정으로 예산 지원(안 제4조), 운영계획의 수립(안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6조), 입사학생자치회의 구성 등(안 제7조), 운영규정(안 제8조), 입사학생 선발(안 제9조)을 규정하는 등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교육감의 책무에 대한 검토(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부합하는 기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숙사 입사학생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12년에 제정되었는바, 안 제3조에서 기숙사 운영 전반에서 동 조례의 취지⁴⁾에 부합하도록 학생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료됩니다.

3) 입사학생자치회 및 기숙사 운영규정에 대한 검토(안 제7조 및 제8조)

- 안 제7조에서는 학교장이 입사학생자치회의 구성 및 활동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에서는 학교장이 기숙사 운영규정 제·개정 시 입사학생 또는 입사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는 학교장이 학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⁵⁾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 권리’와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별첨 관계법령 참조)
- 따라서 안 제7조 및 제8조가 입사학생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 및 다른 조례의 규정 취지를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기숙사 운영 전반에 있어서 입사학생의 참여와 권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도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8588, 2021.6.4.).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21. 3. 25.] [서울특별시조례 제7888호, 2021. 3. 25., 일부개정]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리
2. 학생총회,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사·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다른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부당하게 학생 자치활동을 금지·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